Tc-99m 양도·양수 이후 업무 진행

1. 양도양수 신고

① Tc-99m 을 양도·양수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②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(http://rasis.kins.re.kr/rasis/index.jsp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
③ 분류별 전자민원신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클릭합니다.

⑦ 양도기관 또는 양수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양도·양수 신고를 신청합니다.

⑧ 각 화면에서 입력을 요하는 사항들을 기입하고 민원신청합니다.

1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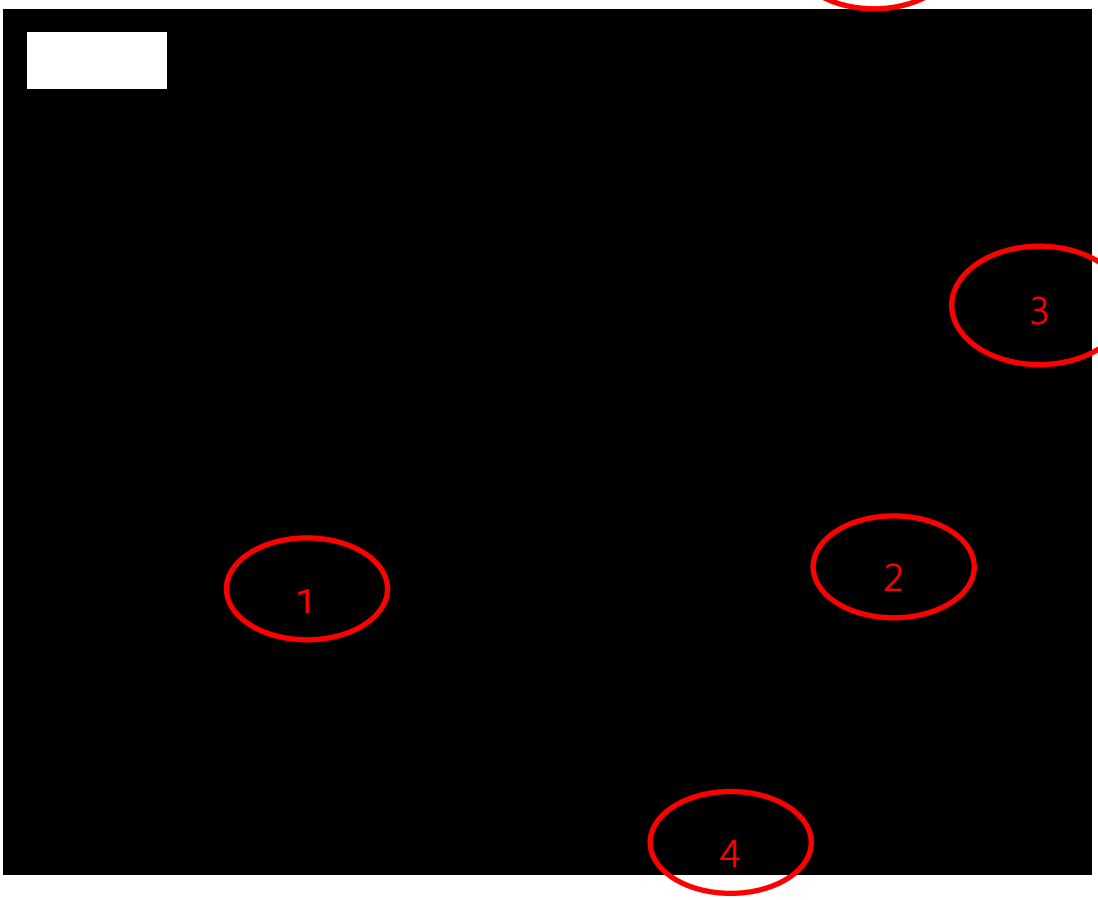

※ 양도양수 신고 방사능량은 양도요청한 방사능량이 아니고, 실제 반출한 양을 기준으로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. 이 후에 분기보고 시에도 양도양수 신고한 양으로 분기보고를 실시합니다.

다만, 이미 양도요청한 방사능량으로 신고한 기관에서는 수정보고 하지말고, 추후에 분기보고 시에도 양도양수 신고한 방사능량으로 분기보고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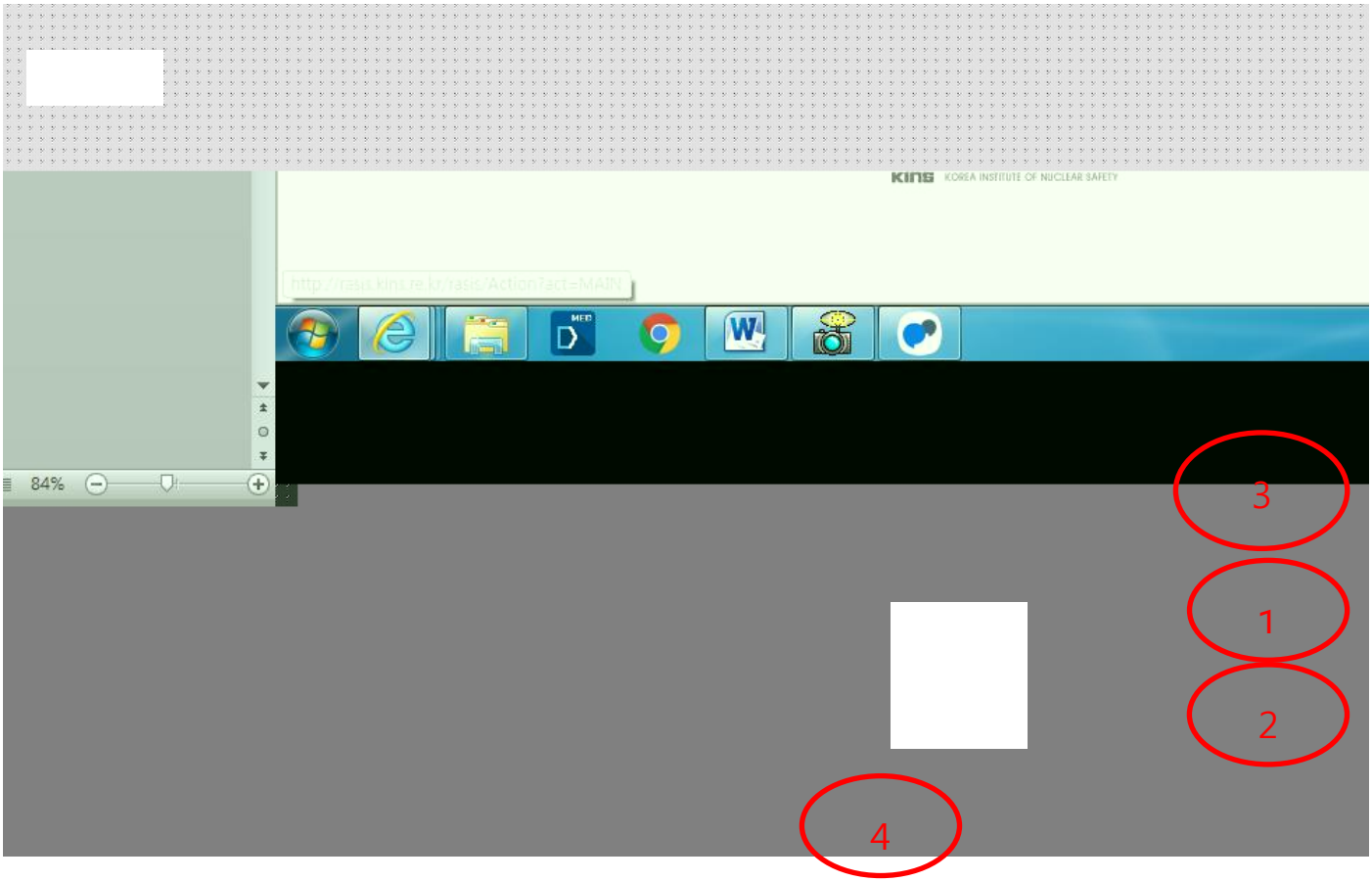

※ 개봉선원의 경우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저장란에 (해당사항 없음)이라는 제목으로 빈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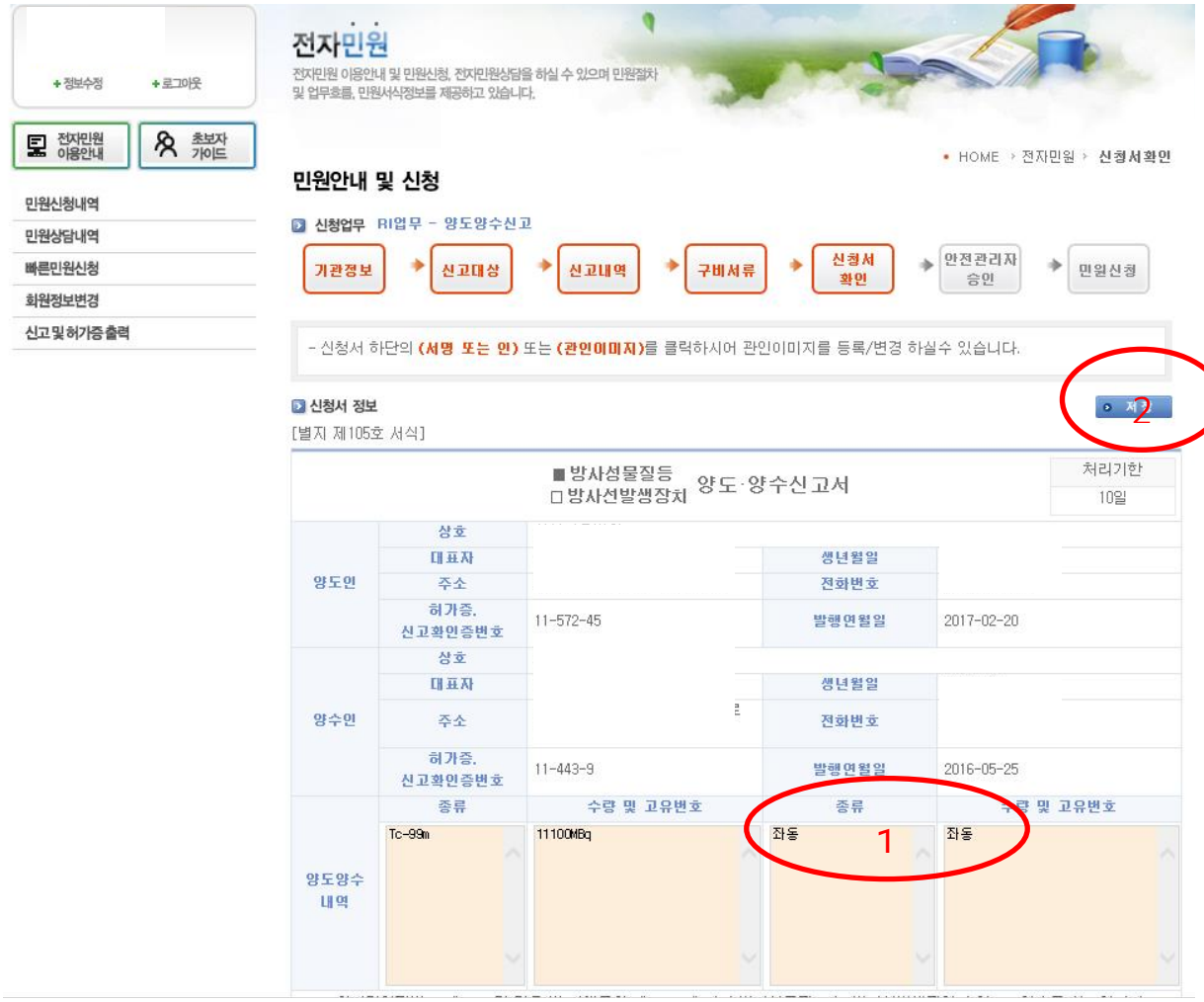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· 양수를 신고합니다.

양도·양수일자 2017년 10월 30일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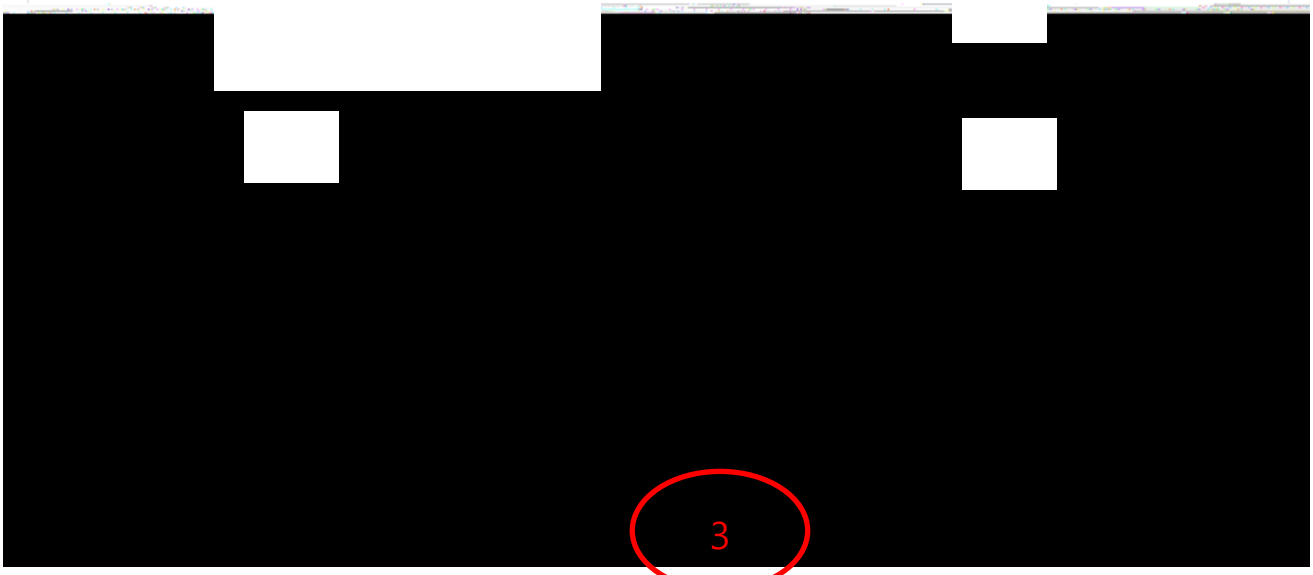
신고일자 2017년 11월 24일